

#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2022. 4. 22.  
개정 2026. 4. 28., 2026. 5. 2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및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 제92조에 따라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백석대학교 및 백석대학교부속유치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허가, 승인, 검사, 점검, 지도, 평가,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법인 및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 아.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이란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원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임원 및 교직원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사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및 교직원이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진보 요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④ 소속 기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 채용 제한)**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과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삭제

**제9조(특혜의 배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원 및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과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원 및 교직원,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법인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카드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관계의 우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원 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4.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법인과 학교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인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인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삭 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원 및 교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거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징계)** 소속 기관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징계 규정 등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되 행동강령책임관은 각 소속기관의 청탁방지책임관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의 특례)** 이 강령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심의 등의 모든 절차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인권센터에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의3(교육)** 각 소속기관장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한 경우에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이 강령에서 정하는 상담 및 신고 서식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를 준용한다.

② 이 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행동강령 개정)** 이 강령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강령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강령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